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
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가보훈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,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질병에 걸리거나 그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,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이 직무수행과 질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만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, 그 과정에서 의학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정보가 없는 신청인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음.

이에 국가의 수호·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유해환경 또는 위험한 환경에 일정기간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추정하도록 하여,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과정에서 입증부담을 덜어주고자 함(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)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상당기간 유해·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거나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로서 전역 또는 퇴직 전에 진단받은 경우에는 별표 1 제2호의 2-8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추정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구체적인 질병명,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한 기간 등을 판단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적용례)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등록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) ①·②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3조(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상당기간 유해·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거나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로서 전역 또는 퇴직 전에 진단받은 경우에는 별표 1 제2호의 2-8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추정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④ 제3항에 따른 구체적인 질병명,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한 기간 등을 판단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.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	
연 락 처	(044) 202 - 5431